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6. 11. 1.
제254회 임시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10월 11일

○ 회부일자 : 2006년 10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54회 충청북도 임시회

○ 2006. 10. 25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가. 제안 이유

- 학교환경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를 주도할 지역 인재 양성 및 범사회적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안 제2조 ~ 제6조)

- 구 성 : 30인 이내 (의장 : 도지사)
- 대 상 : 도의회의장, 교육감, 도교육위의장, 대학 총 · 학장, 민간사회단체장, 교육행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기 능 : 교육발전 발전방향 및 정책 제안,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우수학교 육성 · 유치에 관한 사항 등

○ 실무위원회 설치(안 제7조)

- 구 성 : 10인 이내
- 대 상 : 협의회 위원으로 소속된 기관 · 단체 추천으로 위촉
- 기 능 :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 및 검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학교환경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 충청북도의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학교환경개선 지원, 우수학교 육성 및 유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엄격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발전하여 각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져 오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은 아직도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의 자주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의존재원 95.4%, 자체재원 4.6%

○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는 집행기관의 대표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 학예에 관하여는 대표권 및 집행권이 배제되므로써 교육에 문제점이 있어도 교육청 외에는 아무도 교육문제에 나서지 말라는식의 교육행정시스템과 과거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교육은 국가사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자치단체의 장은 그 동안 지방교육행정에는 무관심하여 왔음.

○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역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교육이 주민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정치적 수장인 단체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성 등 교육행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과의 협조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9조제2항의 “위원장”은 “의장”으로 문구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동 조례안중 일부 직위 명칭이 혼동의 소지가 있어 합리적으로 명칭을 정리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장의 명칭 “의장”을 “회장”으로 수정함.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10. 25.
제안자 : 조영재의원 외

□ 수정 이유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협의회
장의 명칭 “의장”과 협의회 위원인 도의회 의장, 교육위원회 의장
등 직위명칭이 혼동의 소지가 있어 협의회 장의 명칭을 “회장”으로 수
정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의 장의 명칭 “의장”을 “회장”으로 수정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중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한다.

안 제12조 중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u>의장</u>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u>의장</u>은 충청북도지사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도지사가 위촉한다.</p> <p>1.~6. (생략)</p> | <p>제3조(구성) ①----- <u>회장</u>----- ----- ②--- <u>회장</u>----- ----- ----- 1.~6. (제정안과 같음)</p> |
| <p>제5조(<u>의장</u>의 직무) ①<u>의장</u>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u>의장</u>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의장</u>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 <p>제5조(<u>회장</u>) ①<u>회장</u>----- ----- ②<u>회장</u>----- ----- <u>회장</u>----- -----</p> |
| <p>제6조(회의) ①<u>의장</u>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u>의장</u>이 된다 ②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u>의장</u>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생략)</p> | <p>제6조(회의) ①<u>회장</u>----- --- <u>회장</u>----- ②----- ----- <u>회장</u>----- ③ (제정안과 같음)</p> |
| <p>제9조(고문) ①(생략) ②고문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u>위원장</u>의 자문에 응하며, <u>위원장</u>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 <p>제9조(고문) ①(제정안과 같음) ②----- ----- <u>회장</u>----- ----- <u>회장</u>----- ----- -----</p> |
| <p>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의장</u>이 정한다.</p> | <p>제12조(운영세칙)----- ----- ----- ----- <u>회장</u>-----</p>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학교환경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범사회적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2.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3. 우수 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도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장
2. 도교육감
3. 도교육위원회 의장
4. 도내 대학 총장 또는 학장
5. 민간사회단체장

6.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장이 된다

②협의회 회의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협의회 간사는 기획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고문) ①협의회는 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계 원로 중 5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